

| 「Review Question」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교과목               | 탄소인벤토리 구축 및 목표관리제 컨설팅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강의주제              | 탄소성적표지 인증 컨설팅(이론)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출제자               | 김익                    | 연락처 | kohung@smart-eco.co.kr |

## 1. 탄소배출량 인증과 저탄소제품 인증의 정의와 상호관계를 설명하시오?

- 탄소배출량 인증은 1단계 인증으로 인증대상 제품에 대한 기준 탄소배출량을 인증하는 단계
- 저탄소제품 인증은 2단계 인증으로 탄소배출량 인증을 취득한 제품이 일정기간 동안 온실가스를 감축한 실적이 정부가 제시한 최소탄소배출량과 최소탄소감축율을 만족시킬 경우에 부여하는 인증

## 2. 제품에 대한 탄소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5개 서로 다른 제품군의 전과정에서 데이터 수집범위를 그림으로 설명하시오

- 생산재는 원료채취단계에서 제품제조단계까지를 포함하며, 1차원료 생산단계에서 제품제조단계로 수송을 포함한다.
- 에너지비사용내구재는 사용단계를 제외한 제품 전과정을 포함하며, 1차원료 생산단계에서 제품제조단계로의 수송과 제품제조단계에서 사용단계로의 유통을 포함한다.
- 비내구재는 에너지비사용내구재와 동일한 데이터 수집범위를 가진다.
- 서비스는 생산재와 동일한 데이터 수집범위를 가진다.
- 에너지사용내구재는 1차원료 생산단계를 제외한 제품 전과정을 포함하며, 제품제조단계에서 사용단계로의 유통을 포함한다.



### 3. 신청자가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신청한 후에 심사단이 인증심의를 요청하기 전까지의 과정을 설명하시오?

- 신청서 확인 및 접수증 교부: 인증기관은 신청자로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으면 신청서류를 확인한 후에 문제가 없으면 접수증을 교부한다.
- 심사비 청구: 인증기관은 심사일수를 책정하고 신청자에게 심사비를 청구한다.
- 납부확인 및 심사단 구성: 인증기관은 심사비가 납부된 경우에는 심사단장 1인과 심사원 1인으로 구성된 심사단을 구성한 후에 심사단에게 인증심사를 의뢰한다.
- 서류심사: 심사단은 인증기관으로부터 심사의뢰를 받으면 즉시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심사결과를 신청자에게 송부한다.
- 현장심사 계획서 송부: 서류심사결과에 대한 시정조치가 확인되면 심사단은 신청자와 현장심사 일정을 조율하여 현장심사계획서를 보낸다.
- 현장심사: 심사단은 현장심사를 진행한 후에 부적합사항을 포함한 종합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심사단장과 신청자 대표가 서명날인한 후에 1부씩 보관한다.
- 수정확인 및 심의의뢰서 작성: 심사단장은 신청자가 종합심사보고서에 있는 부적합사항을 수정하였는지를 확인한 후에 적합한 경우에는 심의의뢰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한다.